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3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강선우 · 김영호 · 박상혁

박주민 · 문대림 · 강유정

김영환 • 이기헌 • 송옥주

차지호 · 문정복 · 허 영

의원(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당원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당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와 조직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

설].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정당 예산과정의 당원참여 제도 및 예산기구 운영

- 제33조의2(정당 예산과정의 당원 참여) 정당은 그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장에서 "당원참여예산 제도"라 한다)와 제33조의3에 따른 당원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 제33조의3(당원참여예산기구) ① 정당은 제33조의2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당원 참여와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원참여예산위원회 등 당원참여예산기구(이하 이 조에서 "당원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당원참여예산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33조의4에 따라 정당의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당원의 의견 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원참여예산기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3조의4(정당 예산안의 당원 의견서) 정당의 예산안에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당원의 의견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33조의5(당원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당의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장의2 정당 예산과정의
	당원참여 제도 및 예산기구 운영
<u><신 설></u>	제33조의2(정당 예산과정의 당원
	참여) 정당은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장에서 "당
	원참여예산제도"라 한다)와 제
	33조의3에 따른 당원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u>사항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u>
	<u>한다.</u>
<u><신 설></u>	제33조의3(당원참여예산기구) ①
	정당은 제33조의2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당원 참여
	와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원참
	여예산위원회 등 당원참여예산
	기구(이하 이 조에서 "당원참
	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u>있다.</u>
	② 당원참여예산기구는 다음
	<u>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33조의4에 따라 정당의 예
 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당원
 의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원참여예 산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33조의4(정당 예산안의 당원 의견서) 정당의 예산안에는 당 원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 한 당원의 의견서가 포함되어 야 한다.

제33조의5(당원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정당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정당의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있다.

<신 설>

<신 설>